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46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성일종·엄태영·어기구

백종헌 · 강명구 · 인요한

박수민 · 임종득 · 강선영

서범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 · 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함.

그런데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는 6·25참전유공자만이,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단체 회원 자격이 없는 유족은 단체를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.

이에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는 6·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,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(안 제18조, 제18조의2, 제19조 및 제24조).

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6·25전쟁 참전유공자"를 "6·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"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중 "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"을 "제2조제 2호나목·라목에 따른 사람 및 그 유족"으로 한다.

제19조 본문 중 "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"을 "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같은 조 제2호 나목·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은"으로 한다.

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"6·25전쟁 참전유공자"를 각각 "6·25 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8조(대한민국6 · 25참전유공자 | 제18조(대한민국6 · 25참전유공자 회의 설립) ① 6 · 25전쟁 참전 회의 설립) ① 6 · 25전쟁 참전 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유공자와 그 유족-----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 민국6 · 25참전유공자회(이하 "6 · 25참전유공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8조의2(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 | 제18조의2(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 회의 설립) ① 제2조제2호나목 회의 설립)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·라목에 따른 사람 및 그 유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 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 회(이하 "월남전참전자회"라 한 다)를 둔다.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9조(회원의 자격) 제2조에 따 제19조(회원의 자격) ------른 6 · 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-----참전유공자와 그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유족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•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 각각 6·25참전유공자회 또는 유공자와 그 유족은-----

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수 있다. 다만, 「고엽제후유의 중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 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.

제24조(사업) 6·25참전유공자회 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- 6 · 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
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
 도모
- 2. <u>6 · 25전쟁 참전유공자</u>의 복 지증진 및 권익신장
- 3. <u>6 · 25전쟁 참전유공자</u>의 명 예선양 및 추모사업

4. • 5. (생략)

_1]	,
세	24조(사업)
	1. <u>6·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</u> <u>유족</u>
	2. <u>6·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</u>
	<u>유족</u>
	-
	3. <u>6 · 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</u>
	유족
	- 4.·5. (현행과 같음)
	1, U, (1! 0 T E U /